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30 선고 2020나20547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9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3. 31. 선고 2019가소2442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7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이 D와 공사와 관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D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나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,127만 원을 인출하였는바, 그 중 지급할 이자비용 363만 원과 반환받은 돈 18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9만 원은 실질적으로 D의 부(夫)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,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그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는 것인바(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), 원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D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심준보, 판사 박창우, 판사 김한철